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57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오세희 · 이광희 · 맹성규
강준현 · 박해철 · 권향엽
강경숙 · 김재원 · 김현정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소상공인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낮은 거래상 지위로 인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이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ombudsman에 대한 의견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성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

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로 한다.

“제6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35조 및 제34조로 하고, 제35조(중전의 제3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단체”를 “단체(이하 “소상공인 단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단체”를 “소상공인 단체”로 한다.

제6장 소상공인 단체

제6장에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소상공인 단체협상권) ① 소상공인 단체는 거래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제외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제공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 연합회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른 상인 연합회
3. 그 밖에 소상공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단체협상을 요구받은 자는 단체협상을 요구한 모든 소상공인 단체와 성실히 협상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상공인 단체는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협상권의 내용, 제3항에 따른 단체협상을 요구받은 자의 의무 및 제4항에 따른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35조의2에 따른 단체협상 결과

성립한 합의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단체협상권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소상공인 단체가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④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u></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략)</p> <p>② <u>소상공인</u>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u></p> <p>-----</p> <p>-----</p> <p>-----</p> <p>---</p>
<p>제35조(지원기관의 설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34조(지원기관의 설치) (현행 제35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소상공인 단체</u></p>
<p>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①</p> <p>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u>단체</u>를 설립할 수 있다.</p>	<p>제35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①</p> <p>-----</p> <p>-----</p> <p>-----<u>단체(이하 “소상공인 단체”라 한다)</u>-----</p> <p>---</p>
<p>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p>	<p>② <u>소상공인 단체</u>-----</p>

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2(소상공인 단체협상권)

① 소상공인 단체는 거래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제외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3. 그 밖에 소상공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단체협상을 요구받은 자는 단체협상을 요구한 모든 소상공인 단체와 성실히 협상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상공인 단체는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협상권의 내용, 제3항에 따른 단체협상을 요구받은 자의 의무 및 제4항에 따른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u><신 설></u></p> <p><u>제6장 보칙</u></p>	<p><u>제35조의3(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35조의2에 따른 단체협상 결과 성립한 합의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u>제7장 보칙</u></p>
--	--